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

-5주차-

1. 학생인권

- 1) 인권
- 2) 학생인권
- 3) 학생인권 침해사례
- 4) 해결방안

2. 교권

- 1) 교권
- 2) 교권 침해사례
- 3) 해결방안

1. 학생인권

1) 인권

: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 국가와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

즉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는 보편적 권리이자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가지는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

<인권의 전제>

- ▶ 첫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
 - ▶ 둘째, 보편성(모든 인간에게 타당)
 - ▶ 셋째, 도덕적 권리(제도적 권리 X)
 - ▶ 넷째, 당위적 권리
- 

2) 학생인권

-인권 +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학생이 한 인간 존재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인 자유권 및 복지권, 그리고 사회적 지위권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할 때

⇒ '한 인간 존재이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학생'과 '학교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 동시 고려

법률에 규정된 학생인권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합한 학습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5년 12월 31일까지 185개국 이 비준

-우리나라도 동 협약을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갖게 됨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
님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2)

<네 가지 일반원칙>

첫째, 차별금지(2조)

둘째, 아동의 최선의 권익(3조)

셋째,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6조)

넷째, 아동의 의견(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3)

<주목할만한 조항>

- 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학칙을 운영할 것을 규정한 조항(제28조)
- 교육의 목표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함양을 제시한 조항(제29조)
-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협약을 홍보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제42조)

▶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표현의 자유(1)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표현의 자유(2)

-표현의 자유의 한계

<헌법 제 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3)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12조>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13조 1항>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1)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권의 제한

▶ 법적 측면(1)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법적 측면(2)

-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

ex) 특별권력관계론, 재학계약설

▶ 법적 측면(3)

<특별권력관계론>

- 학생의 인권 제한 가능. 언제?

=> 학교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 이때는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경우 학교규칙은 학교의 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

but, 최근에는 특별권력관계론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

▶ 법적 측면(4)

<재학계약설>

- 학교 등록 => 학교와 계약 => 규율 준수도 계약

-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 계약상의 구속력 => 복종

-우리나라 : 계약적인 관계X

-계약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학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가 임의로 정한 학교규칙을 강요할 수 없다.

▶ 제도적 측면(1)

<학교규율>

- 학교규율은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측면으로서 학교규칙처럼 명문화된 것 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해 비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규율도 포함된다.

▶ 제도적 측면(2)

<학교규율의 문제점>

- 학교규율이 교장과 일부 부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학생들에게는 이에 순종할 것만을 강요
- 학생들이 학교규율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 학생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봄,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학생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회, 문화적 측면(1)

<입시 문화>

-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행동성향도 주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학교 현실에서 교사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학교규율과 권위적인 위계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작용

▶ 사회, 문화적 측면(2)

<권위주의 문화>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학생들의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압적인 통제의 기제로 작용

3) 학생인권 침해사례

- ▶ 두발규제(1)



K중에서 강제이발을 하고 있는 모습

▶ 두발규제(2)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2005)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

“특별히 강제이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체벌(1)



서울 시내 학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중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동영상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제공

▶ 체벌(2)

<2004년 대법원 판례>

-체벌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4가지-

첫째,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둘째,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한 행위.

셋째,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넷째,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체벌(3)

<2006년 헌법재판소 판례>

-체벌의 허용 한계 -

첫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둘째, 체벌의 절차준수

셋째, 체벌의 방법 적정

넷째, 체벌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것

▶ 체벌(4)

1996년 교육인적자원부 체벌 불허 방침

=> 1997년 국회 체벌 제한적 허용

=> 1998년 서울시 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 1999년 교육부 학부모, 학생, 교사의 합의 아래 체벌규정
만들어 시행토록

=> 2002년 교육부 체벌도구, 부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벌점제 도입

=> 2010년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체벌전면금지

▶ 표현의 자유

- 학급회, 학생회 - 학교 내의 권위주의 문화,
 - 비민주적인 학칙
 - 학생회의 운영 규정의 제정 권한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현실
- 교지, 학교 신문 - 학교의 검열 대상
- 학교 홈페이지 - 대부분 실명제
 - 익명으로 된 경우도 학생의 신분이 밝혀지곤 함

▶ 집회의 자유(1)

-학생의 자치활동 : 학교당국의 승인 필요

-학교 외부의 활동, 특히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엄격히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위나 결사행위를 무조건 불법화하는 경향이 있음.

▶ 집회의 자유(2)

-2005년 5월에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두발규제반대집회 참가를 불법시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경고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위축시킴



▶ 기타

- 교내 CCTV 설치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강제학습 : 학생의 동의 없이 이루어짐
- 차별 : 장애, 성 소수자, 이주민, 경제력, 성적, 외모, 나이/학년

4) 해결방안

[표 2]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주요 조항 비교

| 영역 | 주요 내용 | 경기 | 광주 | 서울 | 전북(안)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함 | ○ | ○ | ○ | ○ |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함 | | | ○ | ○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은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 | ○ | ○ | ○ |
| |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함 -교육감과 학교장은 가정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 | | ○ |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 의사에 반한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를 금지함 | ○ | ○ | ○ | ○ |
| | -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가능하다고 규정함 | | ○ | ○ | |
|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함 | ○ | ○ | ○ | ○ |
| |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단,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제·개정한 학교규칙으로 규제 가능 | ○ | ○ | ○ | ○ |
| | -급식비 미납 등 학생의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금지 | ○ | ○ | ○ | ○ |
| 양심·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행사 참여 또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거나 사실상 우대하는 등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함 ※서울은 종교 자유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 | ○ | ○ | ○ |
| 의사 표현의 자유 |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전북은 집회 또는 단체활동 참여 권리를 추가로 명시함 ※서울은 학교장 등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되 학내 집회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 ○ | ○ | ○ |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자치조직 구성·활동, 학교규정 제·개정, 정책결정 참여 권리 | ○ | ○ | ○ | ○ |
|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광주제외) 설치·운영 | ○ | △ | ○ | ○ |
| | - 학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가능 | | | | ○ |

2. 교권

1) 교권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 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 수업할 권리, 교육과정의 편성권리, 교재의 선택권리, 교육방법의 결정권리, 교육평가의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 교사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즉,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 당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 교사는 쟁송제기권을 갖는다. 교사는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교육기본법 제15조 >

: 교사에게는 교원단체 활동권이 있다. 교사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34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보수기준은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 연금 및 실비보상 등의 청구권 외에 특별수당, 연구수당, 교직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

: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1)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2)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

: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교권침해 사례

▶ 교권침해란?

=>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 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

▶ 신분피해

<세 가지 유형>

첫째,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둘째, 부당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거부, 관리직에서 평교사로의 강등 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셋째, 수업시간축소나 수업권배제, 학부모의 부당요구 등 교육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미흡과 공립학교 교원과의 차등에 기인한 '불리한 처분'이 많이 나타남.

=> 또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는 국, 공립 교원에게만 마련되어 있음.

▶ 학교안전사고

-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학부모보다는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에 민원제기와 언론을 이용

▶ 학부모의 부당행위

-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과도한 행동을 말함

<표 II-12> 부당행위 원인

(단위:%)

| 구 분 | | 학생 체벌 | 폭행·협박·폭언 | 학생지도 학교운영 | 계 |
|------|--------|-------------|-------------|-------------|----|
| 성별 | 남자 | 18 (33.96%) | 11 (20.75%) | 24 (45.28%) | 53 |
| | 여자 | 8 (20.51%) | 13 (33.33%) | 18 (46.15%) | 39 |
| 설립별 | 국·공립 | 20 (20%) | 20 (20%) | 40 (50%) | 80 |
| | 사립 | 6 (50%) | 4 (33.3%) | 2 (16.7%) | 12 |
| 학교급별 | 유·초·특수 | 11 (22%) | 13 (26%) | 26 (52%) | 50 |
| | 중등 | 15 (35.71%) | 11 (26.19%) | 16 (38.1%) | 42 |
| | 대학 | - | - | - | - |
| 직위별 | 교사 | 22 (32.4%) | 18 (26.5%) | 28 (41.1%) | 68 |
| | 교감·교장 | 4 (16.7%) | 6 (25%) | 14 (58.3%) | 24 |
| | 교수 | - | - | - | - |
| 합 계 | | 26 (28.3%) | 24 (26.1%) | 42 (45.6%) | 92 |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회복 및 교직상당 활동실적, 2008

▶ 명예훼손

<원인>

- 학생지도에 대한 오해
-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
- 성희롱(추행)
- 학교운영

=> 최근에는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무고성 민원제기가 학생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특정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남

▶ 교직원간의 갈등

<원인>

- 학교경영간섭
- 학교 구성원간 사적인 갈등
- 학교운영
- 학생생활지도

3) 해결방안

▶ 교권침해 예방전략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 학부모의 학교방문이나 수업참관기회 확대
- 여론 주도층의 학교방문기회 확대

<교원,학생,학부모 헌장 제정>

-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학교헌장의 제정
- 각종의 분쟁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철저히 제시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

▶ 교권침해 분쟁조정전략(1)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음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X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 위원회의 법적 실효성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교권침해 분쟁조정전략(2)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제의 변화모색>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음
- 학교장이 직접, 혹은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규정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시급히 요청됨.

▶ 교원의 신분보장 전략(1)

<사립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도입>

-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동일한 교사자격을 가진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사립교원에 대한 제도도입, 또는 법령개정 필요

▶ 교원의 신분보장 전략(2)

<단일법률 제정을 통한 교원지위 법률주의 실현>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갖추어진 현행 제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Ex) 사립학교법 상의 교원 관련 규정이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지배를 받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차용 또는 준용

-교원지위에 관한 모범으로서의 단일 법전의 제정이 요청

감사합니다.